##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

[시행 2024. 9. 10.] [기획재정부령 제1081호, 2024. 9. 10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재산세제과) 044-215-4313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종합부동산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)** ①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9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"란 별지 제1호서식(1) 및 별지 제1호서식(2)를 말한다. <개정 2014. 3. 14., 2020. 3. 13.>
  -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.<개정 2020. 3. 13.>
  -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"란 별지 제2호서식(1) 및 별지 제2호서식(2)를 말한다.<개정 2014. 3. 14.>
  -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08. 4. 29.]

제2조의2 삭제 <2009. 5. 12.>

제2조의3(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)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"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(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)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09. 5. 12., 2013. 6. 28.> [본조신설 2008. 4. 29.]

제3조 삭제 <2006. 7. 13.>

- **제4조(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)**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"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08. 4. 29, 2009. 5. 12, 2011. 9. 7, 2020. 3. 13, 2022. 7. 27.>
  - 1.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
  - 2.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
- 제4조의2(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)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"이란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한국국방연구원법」 및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라 설립되거나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09. 5. 12.]

**제4조의3(주택매입기관의 범위)**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0. 3. 13.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4조의4(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)**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
  - 2.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
  - 3.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22. 3. 18.]

[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6으로 이동 <2022. 3. 18.>]

- **제4조의5(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)**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  - 1. 경기도 연천군
  - 2.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

[본조신설 2023. 3. 20.]

[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<2023. 3. 20.>]

- 제4조의6(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)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 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「소득세법」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 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(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4. 3. 22.>
  -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9. 23.]

[제4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<2023. 3. 20.>]

- 제4조의7(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)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)마)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  - 1.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   - 가. 「주택법」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
    - 나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
    - 다.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
  - 2.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(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
  - 3.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
  -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)라)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<개정 2024. 9. 10.>
  - 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
  - 2.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 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준공 후 미분양주택"이라 한다)일 것
  - 3.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
  -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
- 2.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,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
- 3.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
- 4.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

[본조신설 2024. 3. 22.]

[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8로 이동 <2024. 3. 22.>]

- 제4조의8(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)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<개정 2024. 3, 22.>
  - 1.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: 매매계약서 사본(「소득세법」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- 2.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)에 해당하는 경우: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
  -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.<개정 2022. 9. 23.>

[본조신설 2022. 3. 18.]

[제목개정 2022. 9. 23.]

[제4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9로 이동 <2024. 3. 22.>]

- **제4조의9(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)**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 2호의6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  - <개정 2022. 3. 18., 2022. 9. 23., 2023. 3. 20., 2023. 9. 27., 2024. 3. 22.>
  - 1.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[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(이하 이 항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]: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1의2.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: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2.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
  - 3.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경우: 「주택법」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4.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5.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 경우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
  - 5의2.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:「도시개발법」제21조의3제1항이나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 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·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- 6.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: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    -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
    - 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7. 영 제4조의4제1항제7호의 경우: 종중(宗中)이 발급받은「법인 아닌 사단・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 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
- 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<개정 2022. 9. 23.>
- 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
- 2. 건물등기사항증명서
- 3. 건축물대장

[본조신설 2021. 3. 16.]

[제4조의8에서 이동, 종전 제4조의9는 제4조의10으로 이동 <2024. 3. 22.>]

- 제4조의10(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)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"란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(변경)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2. 3. 18., 2022. 9. 23., 2024. 3. 22.>
  -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  -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  - 2.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
  - 3.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  - 4.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

[본조신설 2021. 3. 16.]

[제4조의9에서 이동 <2024. 3. 22.>]

- 제5조(종합부동산세 부과·징수관련 서식)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"란 「국세 징수법 시행규칙」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. <신설 2008. 4. 29., 2021. 3. 16.>
  -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<개정 2007. 9. 27., 2008. 4. 29., 2009. 5. 12.>
  - ③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(1), 별지 제4호의2 서식(2), 별지 제4호의 3 서식(1), 별지 제4호의3 서식(2), 별지 제4호의4 서식(1) 및 별지 제4호의4서식(2)에 의한다.<개정 2007. 9. 27., 2008. 4. 29., 2009. 5. 12.>
  -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.<개정 2007. 9. 27., 2008. 4. 29., 2009. 5. 12.>

[제목개정 2008. 4. 29.]

**제6조** 삭제 <2017. 3. 10.>

제6조의2 삭제 <2020. 3. 13.>

- **제6조의3(분납신청관련 서식)** 영 제16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. [본조신설 2008. 4. 29.]
- 제6조의4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)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"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,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「국세징수법」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0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.<신설 2023. 3. 20.>
-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.<신설 2023. 3. 20.>

[본조신설 2022. 9. 23.]

[제목개정 2023. 3. 20.]

제7조(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)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

-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(1), 별지 제9호서식(2), 별지 제9호서식(3), 별지 제9호서식(4), 별지 제9호서식(5) 또는 별지 제9호서식(6)에 따른다.<개정 2006. 7. 13.>
-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(1) 내지 별지 제10호서식(3)에 의한다.
-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(1), 별지 제11호서식(2), 별지 제11호서식(3) 또는 별지 제11호서식(4)에 따른다.<개정 2006. 7. 13.>

제8조(의견조회관련 서식)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.

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.

제9조(조사원증)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.

제10조 삭제 <2009. 5. 12.>

제11조 삭제 <2009. 5. 12.>

부칙 <제1081호,2024. 9. 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